

과주시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인가

□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개 요			
위 치	과주시 탄현면 범흥리 1294번지 일원			
부지면적	25,262㎡ (증설부지 3,310.22㎡)			
시설용량	10,000㎥/일 증설 (22,000→32,000㎥/일)			
처리방식	KS-MBR + IPR공법(총인처리)			
처리구역면적	16.46㎢			
사업기간	2025. 12. ~ 2028. 2.			
방류수역	공릉천 → 한강			
인가수질	구분	계획유입수질	법적방류수질 (Ⅲ지역)	계획방류수질
	BOD(mg/L)	229.0	10.0 이하	5.0 이하
	TOC(mg/L)	106.0	25.0 이하	12.0 이하
	SS(mg/L)	260.0	10.0 이하	5.0 이하
	T-N(mg/L)	56.04	20.0 이하	10.2 이하
	T-P(mg/L)	6.60	0.5 이하	0.5 이하
	총대장균군수 (개/mL)	-	3,000 이하	1,000 이하
	생태독성 (TU)	-	1 이하	1 이하

□ 인가조건

1. 파주시 하수도과-17005(2025.8.26.)호 및 -25011(2025.12.15.)호로 제출한
관련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전까지
조치사항이 반영된 최종 보고서 제출하여야 함.
2.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고 협의결과에 따라 필요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
3. 하수관로(방류관로 및 방류펌프장 포함)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위임사무) 제2항에 따라 귀 시에서 관련사항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4.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별도로 설치승인을 받아야 함.
5. 「하수도법」과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인허가 의제 협의된 사항 외에는 개별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6. 공공하수처리시설 법적 방류수질기준을 준수하시고, 민원 발생시 귀 시에서
철저히 대처하여 주시기 바람.
7. 상기 인가조건 미이행 내용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 설치 (변경)인가 취소, 공사 중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가조건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끝.